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 안 호	2321
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2월 18일  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‘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’에 맞춰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를 변경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“3,764,160원”에서 “3,815,000원”으로 변경함( [별표 2] 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, 제34조
- 나. 예산조치 : 월정수당 인상액 2018년 예산 반영(비용추계서 미첨부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월정수당	3,815,000 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 분</th><th>지 급 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월정수당</td><td><u>3,764,160 원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정수당	<u>3,764,160 원</u>	<p>[별표 2] 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 분</th><th>지 급 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월정수당</td><td><u>3,815,000 원</u></td></tr></tbody>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정수당	<u>3,815,000 원</u>
구 분	지 급 액								
월정수당	<u>3,764,160 원</u>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
월정수당	<u>3,815,000 원</u>								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[별표 2]에 근거한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월정수당」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○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일부 조정

- 3,764,160원→3,815,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인당 월 50,840원의 비용 발생

○ 연간 약 6,468만원( $50,840\text{원} \times 12\text{월} \times 106\text{명} = 64,668,480\text{원}$ )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이은영

주무관      박경순

☎ 02-3705-1277, e-mail(kssunbi@seoul.go.kr)